

전문강사 운영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22조(정보의 유출 금지)	7
제 1 조(목적)	제23조(타인 자료 무단 사용 금지)	7
제 2 조(적용대상)	제24조(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7
제 3 조(용어의 정의)	제6장 도핑방지교육 활동	
제2장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제25조(교육 활동 신청)	7
제 4 조(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	제26조(배정기준)	8
제 5 조(구성 및 임기)	제27조(복장)	8
제 6 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8조(수당 등 지급)	8
제 7 조(위원의 해촉)	제7장 전문강사 평가 및 교육	
제 8 조(위원의 직무)	제29조(교육 활동 평가)	8
제 9 조(심의회 운영)	제30조(보수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	8
제10조(심의사항)	제8장 자격 재인증 및 취소	
제11조(수당 등 경비 지급)	제31조(재인증)	8
제12조(직무 관련 비밀 준수)	제32조(자격유보)	9
제3장 전문강사 선발 및 양성	제33조(자격 취소 등)	9
제13조(전문강사 선발계획의 수립)	제34조(이의신청 등)	10
제14조(모집)	제9장 보칙	
제15조(결격사유)	제35조(특별강사 운영)	10
제16조(선발 절차)	부칙	10
제17조(양성교육)	별지	
제18조(양성교육에 대한 평가)	1. 위촉장	11
제4장 전문강사 자격 인증	2. 전문강사 (재)인증 신청서	12
제19조(인증)	3. 서약서	13
제5장 전문강사의 의무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4
제20조(교육 활동에 대한 의무)		
제21조(이력 관리 의무)		

전문강사 운영규정

제 정 2023. 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교육 국제표준(ISE)」, 「교육 국제표준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ISE)」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 제1항 등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 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선수와 선수지원요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도핑방지교육을 수행할 전문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인증한 전문강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Education)”이란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보호하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러한 행동을 발전시키며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도핑을 방지하기 위한 학습의 과정을 말한다.
2.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Program)”이란 「교육 국제표준」과 「교육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가 의도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가치기반 교육(Values-Based Education)”이란 개인의 가치관과 원칙의 개발을 중시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윤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구성요소 중의 하나를 말한다.
4. “인식 제고(Awareness Raising)”란 깨끗한 스포츠와 관련된 주제와 이슈 강조하는 교육 구성요소 중의 하나를 말한다.
5. “정보 제공(Information Provision)”이란 깨끗한 스포츠와 관련된 정확한 주제를 제공하는 구성요소 중의 하나를 말한다.
6. “도핑방지교육(Anti-Doping Education)”이란 도핑방지 주제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깨끗한 스포츠에 동참하고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할 능력을 배양하는 활동을 말한다.
7. “도핑방지교육 활동(Activities)”이란 「교육 국제표준」과 「교육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치기반 교육’, ‘인식 제고’, ‘정보 제공’, ‘도핑방지교육’ 등의 4가지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전문강사, 특별강사, 특임강사가 시행하는 대면교육, 비대면교육, 현장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말한다.
8. “전문강사(Educator)”는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세계도핑

방지구약」, 「교육 국제표준」과 「교육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도핑방지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인증한 교육자를 말한다.

9. “특별강사”는 스포츠 도핑방지 또는 교육 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자와 도핑방지위원회에 재임 중인 임원과 직원 중에서 도핑방지위원회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강사를 말한다.

제2장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제4조(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전문강사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핑방지위원회 사업본부에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도핑방지위원회 내부위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1명, 전문강사 위원(이하 “강사위원”이라 한다) 2명, 외부 전문가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핑방지위원회 사업본부장, 내부위원은 도핑방지위원회 교육진흥부장이 되고, 강사위원은 5년 이상 활동한 강사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전문강사가 선출하며, 외부위원은 도핑방지와 교육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이때 강사위원과 외부위원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1. 인증 전문강사 3명 이상의 단수 추천을 받아 입후보 등록
 2. 입후보자 대상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순으로 상위 2명을 강사위원으로 위촉
 3. 다수 득표수가 동수면 전문강사 인증 기간이 오래된 자를 강사위원으로 위촉
- ③ 강사위원 선출에 입후보자가 없거나 미달한 경우, 심의회가 입후보자를 추천하여 강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강사위원은 인증 기간 재임한다.
-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문강사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핑방지위원회 직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에서 배제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감사·조사·감독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하였던 경우

- ② 심의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위원 본인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한 결정은 위원장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핑방지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은 심의회를 구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 또는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개최
 -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③ 심의회 회의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⑤ 심의회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도핑방지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⑥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0조 제5호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 대상 전문강사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문서를 통해 심의회 개최 7일 전에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해당 강사의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⑦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0조 제5호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 회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의자료 및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강사 운영 기본방침
2. 전문강사 운영규정 개정
3. 전문강사 선발계획
4. 전문강사 포상대상자 추천
5. 전문강사 자격에 대한 인증, 재인증, 자격 취소 및 교육 배정정지 등
6. 기타 전문강사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경비 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도평방지위원회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자문료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관련 비밀 준수) 심의회 의 위원·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심의회 의 안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전문강사 선발 및 양성

제13조(전문강사 선발계획의 수립) ① 도평방지위원회는 원활한 도평방지교육을 위하여 필요시 부족한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 시에는 지원 자격, 우대조건, 선발 시기, 규모,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③ 도평방지위원회는 전문강사를 선발하는 경우 도평방지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강사 선발 시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평방지교육의 대상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성별·지역별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모집) 전문강사 모집 지원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강사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강사로 선발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공공기관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 편제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현재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인한 제재 중이거나, 최근 6년간 도핑방지규정위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
6. 기타 전문강사로 선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선발 절차)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전문강사를 공정하게 선발한다.

- ②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은 도핑방지위원회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③ 도핑방지위원회는 서류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선발계획의 2배수 내외의 인원을 1차 선발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서류심사에 합격한 응시자는 정해진 면접전형 일정에 참석하여 면접시험을 치러야 한다.
- ⑤ 도핑방지위원회는 전문강사 선발 과정에서 도핑방지위원회의 교육 비전 및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 가치관을 가진 전문강사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교육)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전문강사로써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절차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계별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 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문강사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강의역량에 대해 평가한다.
 1. 기초지식: 도핑의 역사, 세계도핑방지규약, 국제표준 등 도핑방지 프로그램 개론
 2. 심화지식: 스포츠 정신 및 가치, 가치기반 교육 방법론, 금지약물의 종류 및 부작용, 보충제 등 건강기능식품 위험성 등
 3. 강의역량: 강의 교안 재구성, 교육대상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강의 시연, 교육 참관 등
 4. 기타 도핑방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전문강사 양성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양성교육에 대한 평가) ①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전문강사 자격 인증을 위해 다음 각호의 평가를 시행한다.

1. 강의 시연 평가
2. 기초지식, 심화지식 등에 대한 필기 평가
3. 기타 도핑방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② 전문강사 인증을 위한 평가는 양성교육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도핑방지위원회 사업 운영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전문강사 자격 인증

제19조(인증)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제18조에 따라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전문강사 자격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 전문강사는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정한 연간 최소 도핑방지교육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전문강사 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강사 인증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 대상자의 학력, 경력, 병역, 신원 관계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⑤ 도핑방지위원회는 전문강사 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전문강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5장 전문강사의 의무

제20조(교육 활동에 대한 의무) 전문강사는 도핑으로부터 선수 건강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조성을 위해 도핑방지위원회의 교육 비전 및 핵심 가치를 함양하고 도핑방지교육 활동 수행에 있어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교육 활동에 임해야 한다.

1. 도핑방지위원회 인증 전문강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 활동에 임하며 전문강사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문강사는 교육주체와 관련된 이론과 실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및 도핑방지

위원회의 정책과 도핑방지 프로그램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한다.

3. 전문강사는 도핑방지위원회 인증 강사로서 예의를 지키며 강의 시간을 준수한다.
4. 전문강사는 배정받은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전문강사는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반 교육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전문강사는 강사 상호 간 또는 교육생에게 성차별, 반인권적인 발언이나 성희롱 등 강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하며, 성적용어는 신중히 사용하여야 한다.
7. 전문강사는 교육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교육생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한다.
8. 전문강사는 교육 의뢰단체의 특성에 맞는 강의를 준비하고, 교육 관련 요청사항을 존중한다.
9.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도핑방지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이력 관리 의무) 전문강사는 본인의 이력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 포털'에 최신 내용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유출 금지) ① 전문강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도핑방지위원회의 관련 정보, 교육 의뢰단체와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해당 단체나 당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 중 사례 활용 시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자의 이름이나 관련 단체명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결과관리 중인 사례는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23조(타인 자료 무단 사용 금지) 전문강사는 교육자료 준비에 있어 이미 발표된 타인의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① 전문강사는 도핑방지위원회 인증 강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강사는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수당, 여비 이외에 추가 수당이나 별도의 금품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6장 도핑방지교육 활동

제25조(교육 활동 신청) 도핑방지교육 활동을 원하는 전문강사는 도핑방지위원회 '교육 포털'을 통하여 교육 공지 내용을 확인한 후 강의가 가능한 교육 활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배정기준)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전문강사를 배정하는 데 해당 강사의 경력과 역량, 거주지역, 교육 대상 및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전문강사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복장) ① 전문강사는 교육 활동 중에는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지급한 유니폼 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기타 전문강사 복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지급)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직원을 제외한 도핑방지교육 활동을 수행한 전문강사에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전문강사 평가 및 교육

제29조(교육 활동 평가)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전문강사의 교육 활동 수행 능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강사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강사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보수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전문강사 재인증과 관련하여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수교육을 비롯하여 최고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식, 강의역량 및 기법 개발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강사 역량 강화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자격 재인증 및 취소

제31조(재인증) ① 전문강사의 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수교육 이수 등 다음 각호의 재인증 요건이 충족된 강사에 한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재인증 할 수 있다.

1. 연간 최소 6회의 도핑방지교육 활동 여부
2.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필수 교육 이수 여부
3. 제29조에 따른 평가 기준
4. 기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기준

② 전문강사 인증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재인증에 필요한 연간 최소 도핑방지교육 활동 횟수를 해당 기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강사 재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제19조 제3항과 같다.

④ 도핑방지위원회는 전문강사 재인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전문강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32조(자격유보) ① 전문강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유보를 원하는 경우 도핑방지위원회는 해당 전문강사의 자격을 유보할 수 있다.

1. 해외 주재를 하게 된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이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하게 된 때
4. 여성 전문강사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반활동이 불가하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유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여성 전문강사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이 필요하게 된 때: 자녀별 1회, 1년 이내
2. 여성 검사관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별 1회, 2년 이내
3.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반활동이 불가하게 된 때: 사유별 1회, 1년 이내

제33조(자격 취소 등) 도핑방지위원회는 전문강사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교육 배정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문제로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제15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0조에서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29조에 의한 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6. 전문강사 서약을 위반한 경우
7. 기타 도핑방지위원회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전문강사가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인증 취소, 자격 취소 배정정지 등의 결정 사항에 불복할 때 한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도핑방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을 경우 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도핑방지위원회 사업본부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 1명은 교육진흥부장을 제외한 도핑방지위원회 부서장급 중에서, 외부 위원 3명 중 1명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여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단, 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심의회 위원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재심의 신청은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재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 ⑥ 도핑방지위원회는 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공문서·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자격은 소집된 해당 재심의위원회 종료로 만료한다.
- ⑧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⑨ 재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참석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 및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보칙

- 제35조(특별강사 운영)** ① 도핑방지위원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 금지약물, 결과관리 등의 스포츠 도핑방지 분야와 체육계, 교육계 등의 전문가와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특별강사 자격을 부여하여 도핑방지교육 활동을 수행토록 할 수 있다.
- ② 특별강사 자격을 부여받는 임직원이 사임, 임기 만료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격은 상실된다.
- ③ 도핑방지교육 활동에 참여한 직원을 제외한 특별강사에게는 「강사 및 외부 전문가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3.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도핑방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31조와 관련하여 활동 중인 전문강사의 인증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선수위원은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제3조 제8호의 전문강사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에 따라 「강사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축 장

성 명:

위축기간:

귀하를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위원장

